### 영등포구의회 제197회 임시회

# 『서<del>울특</del>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』

## 檢討報告書



2016. 10. 25.

社會建設委員會專門委員

##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』

## 檢討報告

#### 1. 경 과

의안 제170호로 2016년 10월 14일 유승용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# 2. 제안이유

영등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,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에너지관련 시책 수립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나. 구청장, 사업자,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안 제6조)

다.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라.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안 제9조)

- 마. 기존·신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에 관한 시항(안 제10조~안 제11조) 바. 공공부문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사. 신·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관한 사항(안 제13조)
- 아. 에너지 절약 등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(안 제14조~안 제15조)

#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련근거

- 「에너지법」제2조(정의),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, 제7조(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), 제9조(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, 제10조(위원회의 기능)
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제4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), 제6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)
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」제3조, 제4조, 제6조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2조(정의)
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제2조(정의)
-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제5조(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)
- 「건축법」제11조(건축허가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- 다. 입법예고(2016. 10. 7. ~ 10. 11.) : 의견 없음.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합리적인 에너지절약,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각종 에너지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본 조례안은 4장으로 나누어 본칙 1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
#### 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, 사업자,
  구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함.
- 2)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에너지 합리화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·평가, 신·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함.

3) 에너지의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대한 정책과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, 신·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에너지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·기술제공과 신·재생에너지 설치관련 보조금 지원 등의 행정적·재정적

지원 사항과 교육·홍보·포상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이용 촉진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신·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앞으로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에너지 체계 구축 및 합리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관 련 법 령

#### ■『에너지법』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3.23.. 2013.7.30.. 2014.12.30.>

- 1. "에너지"란 연료·열 및 전기를 말한다.
- 2. "연료"란 석유·가스·석탄,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(熱源)을 말한다. 다만,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.
- 3. "신·재생에너지"란 <u>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</u>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
- 4. "에너지사용시설"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·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5. "에너지사용자"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.
- 6. "에너지공급설비"란 에너지를 생산·전환·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설비를 말한다.
- 7. "에너지공급자"란 에너지를 생산·수입·전환·수송·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- 7의2. "에너지이용권"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
- 8. "에너지사용기자재"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 재를 말한다.
- 9. "열사용기자재"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,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(斷熱性)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10. "온실가스"란 <u>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</u>제9호에 따른 온실가 스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0.6.8.]

**제4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,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의 생산·전환·수송·저장·이용 등의 안전성,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하여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(이하 "지역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 간으로 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-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
- 2.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- 3. 신·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- 4.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- 5. <u>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5조제1항</u>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
- 6.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·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
-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·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.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.>
-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6.8.]

**제9조(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3.23.>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. <개정 2013.3.23.>
-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사람이 된다.
-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-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-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6.8.]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<u>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1조제2항</u>에 따른 <mark>에너지</mark>기본계획 수립·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
- 2.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
- 3.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
- 4.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
- 5.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
- 6.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
- 7.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
- 8.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
- 9. 「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」에 대한 대책 중 <mark>에너지</mark>에 관한 사항
- 10.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
- 11. 그 밖에 <mark>에너지</mark>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[전문개정 2010.6.8.]

#### ■『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』

**제4조(에너지)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)**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- 1.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
- 2.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
- 3.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
- 4.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
- 5. 에너지원간 대체(代替)

- 6.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
- 7.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(價格豫示制)의 시행에 관한 사항
- 8.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
- 9.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<u>산</u>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2008.2.29., 2013.3.23

제6조(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)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

#### ■『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』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3.23., 2013.7.30., 2014.1.21.>

- 1. "신에너지"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·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- 가. 수소에너지
- 나. 연료전지
- 다. 석탄을 액화·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(重質殘渣油)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- 라. 그 밖에 석유·석탄·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<u>대통령령</u> 으로 정하는 에너지
- 2. "재생에너지"란 햇빛·물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

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- 가. 태양에너지
- 나. 풍력
- 다. 수력
- 라. 해양에너지
- 마. 지열에너지
- 바.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- 사. 폐기물에너지로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. 그 밖에 석유·석탄·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<u>대통령령</u> 으로 정하는 에너지
- 3. "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"(이하 "신·재생에너지 설비"라 한다)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(이하 "신·재생에너지"라 한다)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·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신·재생에너지 발전"이란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"란 <u>「전기사업법」 제2조</u>제4호에 따른 발전 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·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0.4.12.]

#### ■ 『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』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2.29., 2008.3.21., 2009.4.1., 2010.1.13., 2011.4.5.>

- 1. "녹색제품"이란 <u>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</u>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- 2. "공공기관"이라 함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<u>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</u>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, 그 밖에

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**제6조(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)**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4.5.>

- 1.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
- 2.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
- 3. <mark>녹색제품</mark>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
- 4. <u>장애인복지법</u>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<mark>녹색제품</mark>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
- 5.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<mark>녹색제품</mark>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[제목개정 2011.4.5.]

#### ■ 『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』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7.30.>

- 1. "저탄소"란 화석연료(化石燃料)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,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 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.
- 2. "녹색성장"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.
- 3. "녹색기술"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,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, 청정생산기술, 청정에너지 기술,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(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) 등 사회·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.

- 4. "녹색산업"이란 경제·금융·건설·교통물류·농림수산·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(財貨)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모든 산업을 말한다.
- 5. "녹색제품"이란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.
- 6. "녹색생활"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.
- 7. "녹색경영"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,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.
- 8. "지속가능발전"이란 <u>「지속가능발전법」 제2조</u>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을 말한다.
- 9. "온실가스"란 이산화탄소(CO2), 메탄(CH4), 아산화질소(N2O), 수소불화탄소(HFCs), 과불화탄소(PFCs), 육불화황(SF6) 및 그 밖에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.
- 10. "온실가스 배출"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·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전기 또는 열(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)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.
- 11. "지구온난화"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.
- 12. "기후변화"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 계의 변화를 말한다.
- 13. "자원순환"이란 <u>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</u>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.

- 14. "신·재생에너지"란 <u>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</u>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.
- 15. "에너지 자립도"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·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(지분 취득을 포함한다)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

#### ■『집단에너지사업법』

제5조(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 너지공급대상지역(이하 "공급대상지역"이라 한다)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한다.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.>

- 1.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
- 2.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
- 3.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,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하여야 한다.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3.23., 2016.1.6.>
-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[전문개정 2010.1.18.]

#### ■『건축법』

제11조(건축허가)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1.14.>

- ② 시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,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5.28.>
- 1.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. 다만, 도시환경,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
- 2.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·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
- 3.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·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
-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-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.17., 2012.10.22., 2014.1.14.>
- 1.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·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<u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</u>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(이하 "방재지구"라 한다)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
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 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,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·허가등이나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9.6.9., 2010.5.31., 2011.5.30., 2014.1.14.>
- 1.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
- 2.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
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
- 4. <u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5항</u>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- 5. <u>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와 제15조</u>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, <u>같은 법 제15조의2</u>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·신고. 다만,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.
- 6. <u>「사도법」 제4조</u>에 따른 사도(私道)개설허가
- 7. <u>「농지법」 제34조, 제35조</u> 및 <u>제43조</u>에 따른 농지전용허가·신고 및 협의
- 8. <u>「도로법」 제36조</u>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
- 9. <u>「도로법」 제61조</u>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
- 10. <u>「하천법」 제33조</u>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
- 11. <u>「하수도법」 제27조</u>에 따른 배수설비(配水設備)의 설치신고
- 12. 「하수도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
- 13. <u>「수도법」 제38조</u>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
- 14. <u>「전기사업법」 제62조</u>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
- 15. <u>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</u>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

- 16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
- 17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소음·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
- 18. <u>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</u>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
- 19. 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
- 20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
- 21.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
-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.
- ①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있다. <개정 2014.1.14.>
- 1.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·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. 다만,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)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- 2.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.>
-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-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. <신설 2011.5.30.>